

서울특별시의회
제332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
여론조사 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5. 9.

서울특별시의회
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□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

여론조사 조례안」에 대하여
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,

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시민참여를 도모하고자,

의정백서, 홍보책자, 월간서울의회 등

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나,

실제 시민의 의견이 전제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

조례상의 근거가 부재한 실정입니다.

□ 이에 향후 주요 정책 결정 과정 등에서

시민의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

체계적 홍보 체계 마련 구축 및

향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
의정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
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이에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경우,
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활동 및 정책에 필요한
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
의회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
관련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.

□ 안 제3조는 의장의 책무로서
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 공표의 신뢰성과 공정성,
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□ 안 제5조는 여론조사 범위 조항으로,
의회 상임위, 특별위 및 사무처의 요청으로
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
안 제6조의 경우,
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제외할 수 있는
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.

□ 또한, 안 제7조의 경우,
여론조사 의뢰 및 시기,
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
여론조사 선정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.

□ 그리고, 안 제10조의 경우,
여론조사 종료 후 결과 등에 대한 의장 보고에 있어
활용실적 제출 조항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
안 제11조의 경우,
여론조사 결과의 공개 등에 있어
시민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
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.

□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의 경우,
여론조사 수반 경비 예산지원에 대한 조항과,

안 제13조의 비밀준수 조항을 통해
여론조사의 실시 및 수행에 있어
누설 및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
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